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91
----------	------

2025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승미 의원 외 27명  
나.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승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자치경찰사무를 협업하여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3.10.28. ~ 11.01.)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7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주관의 「학교주변 이상상황 식별 및 CPTED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억 6천 6백만원의 시비 분담 의무가 발생했음.

### < 사업 개요 >

- ▶ 추진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협력)  
\* 동국대 융합안전학술원 + 이노뎁(지능형CCTV) + 세명소프트(AI) + (주)타임게이트
- ▶ 협력내용 :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 공공데이터 제공 협조 등
- ▶ 기간 : '25년~'27년(3년)
- ▶ 예산 : 총 17억 3천2백5십만원(국비 14억 6천6백만원, 시비 2억 6천6백5십만원)

구분	국비	시비
'25년	400,000,000원	해당없음
'26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27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계	1,466,000,000원	266,500,000원

### ▶ 주요 내용

- ① (실종아동 수색) AI 기술 활용, 실종상황 발생 시 CCTV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 탐지
- ② (CPTED) 서울 시내 공간정보, 범죄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고, 반드시 조례에 직접적인 지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규율하는 조례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에 선정되고도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본 개정안은 민간 보조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유사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지원을 확약한 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절차의 선후 관계에 따라 의회 재정 통제권의 침해 가능성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안 제17조의2는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p>제17조의2(재정지원)① 시장은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을 완료한 바 있어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정으로 보여짐.

※ 안 제17조의2 제2항에서 민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음.

### 〈 광역시도 조례 중 민간보조 지원 규정이 있는 내역 〉

광역자치단체	민간보조(지원) 관련 규정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023.8.4. 규정 신설
경상북도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022.9.22.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023.12.27. 규정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025.3.7. 규정 신설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022.12.29.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민간보조(지원) 관련 규정	비고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규정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의회 재정 통제권 침해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즉 장래에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행정기관 간 견제(재정통제권등)와 균형 위한 제도적 장치임.
  
-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 · 약속 또는 계약을 합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 (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중략)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2월 21일 및 4월 11일에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을 약속하는 지원확약서를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날인하여 전달하였는바, 이는 장래의 예산 지출을 약속하는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이후 동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실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25년 7월경부터 조례 개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정적 부담을 약속하고, 기정 사실화된 사업을 근거로 사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사례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사업 참여 경위 >

- ▶ ('25.1.24.) 경찰청,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신규과제 선정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25-12호)
- ▶ (2.17.) 동국대 이○○ 교수, '협력요청서' 자치경찰위원회 제출
- ▶ (2.24.) 자치경찰위원회 지원확약서 작성·전달 / 동국대 산학협력단 공모 신청

#### <지원확약서 주요 협력 내용>

- ① 2차년도부터 정부출연금 25% 이상 지방비 매칭
-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협조
- ③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기 회의 및 협의체 운영 협조
- ④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 (4.03.) 경찰청 사업 선정계획 재공고(4.03.~4.14.)  
\* 재공고 사유 : 2개 과제를 선정해야 하나 최초 심사결과 기준(평점 70점)이상 사업이 1개로써 추가 과제 선정을 위해 2차 공모 진행
- ▶ (4.11.) 지원확약서 재작성 동국대 산학협력단 전달 / (4.14.) 동국대 재공모 신청
- ▶ (5.09.) 경찰청, 최종 선정사업 발표(선정지역 : 서울, 전북)

###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요 >

- ▶ 설립 : 2004. 4. 9.
- ▶ 구분 : 비영리법인
- ▶ 주소 :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필동3가, 동국대학교)
- ▶ 목적 : 동국대학교의 연구, 학술,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산학협력 전담 조직
- ▶ 대표 : 강규영
- ▶ 직원 : 107명(2025.8.13.)
- ▶ 자본금 : 5억원(2025.2.28.)
- ▶ 매출액 : 894억 5천만원(2025.2.28.)
  - \* 동종업계 2위(1위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 사업 : 정부 및 기업 과제 수행,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장비 및 시설 운영, 학술연구 용역, 창업 지원,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사업

-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연구개발 사업 공모기간('25.2.4. ~ 2.24.) 이 촉박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지원확약서 교부 당시 본 조례에는 지원근거가 없었음에도 지원을 확약하고 사후 조례 개정으로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조례 개정(민간 보조의 근거 마련) 전 확약한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미 민간 단체에 재정 지원을 약속한 상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권한을 혼재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입법 활동이며, 이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 치안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 또는 실종아동 수색, 범죄 예방 등 향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의 사전 동의 및 지원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약속하고, 사후 입법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91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이승미,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재란, 한신,  
홍국표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자치경찰사무를 협업하여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7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별 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 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p>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7조의2(재정지원)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17조의2(재정지원)은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  
⇒ 다만,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추진 지원비용의 하나의 예시로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관련 비용(국비·시비 배정)을 토대로 일부금액에 대해 추정할 경우 총 266,500천원<sup>1)</sup>(연간 133,250천원, 총 2년 소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재정지원 근거규정의 폭넓은 활용가능성 고려] 재정지원 근거 규정은 규정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사업규정 등과 결합하여 사업추진 근거로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소요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금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관련 >

구 분	국비	시비
2025년	400,000,000원	해당없음
2026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2027년	533,000,000원	133,250,000원
합 계	1,466,000,000원	266,500,000원

주 :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5~2027년(3년)이나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시기는 2026년부터 총 2년이므로 이를 고려